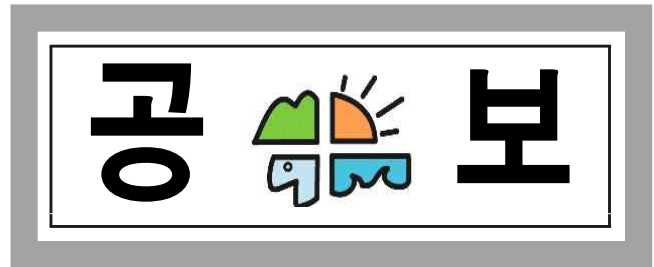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1033호 2016년 11월 28일(월)

공 고

- 속초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2
- 속초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6
- 속초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 속초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발행 : 기 획 감 사 실 (전화 : 639-2223, FAX : 639-2106)

속초시보도구역내 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보도구역내 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 규칙」 제19조(입법예고 대상)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보도구역내 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2. 폐지이유

- 보도구역내 횡단차도(차량 진출입로) 설치 시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 보도구역내 횡단차도는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대상이며,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어, 조례개정의 실익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속초시보도구역내 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폐지

4. 폐지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24826/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건설도시과 토목팀(전화: 033-639-2487, FAX: 033-639-2485)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건설도시과 토목팀(033-639-248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속초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발 채

□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같은 도로(토지를 점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입체적 도로구역을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법 제10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주·전선, 공중선, 가로등, 변압탑,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공중전화,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전기관·전기통신관·송열관·농업용수관·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공동구·배수시설·수질자동측정시설·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4.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표지, 깃대, 현수막, 현수막 게시시설 및 아치. 다만, 현수막 게시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

□ 「속초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3조(원인자 부담금 징수) ①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를 굴착하거나 손괴하여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에는 법 제91조에 따라 원인자로부터 도로복구공사의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원인자가 직접 복구한 공사는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부담금 금액의 산정은 건설표준품셈(최근연도분)의 표준시방에 의한 복구비용 산출단가를 기준으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복구공사 시행) ①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공사 및 시설물 복구는 원인자가 직접 복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인자가 직접 시공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이 시행할 수 있다.

②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한다. 이 경우 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원인자가 시행하는 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지방자치회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하자보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하자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속초시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 규칙」 제19조(입법예고 대상)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

2. 개정이유

○ 조례의 근거법령인 「건설기술 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변경되면서, 위원회 명칭 및 근거조문들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위원회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제명변경 : 속초시설계자문위원회 ⇒ 속초시 기술자문위원회
- 나. 근거법령 변경(안 제1조 및 제7조)
- 다. 부위원장 직위명 변경 및 위원자격 확대(안 제2조)
- 라. 위원회 기능 상위법에 맞추어 변경(안 제3조)
- 마. 조례 제3조와 중복되는 내용의 제5조 및 제6조 삭제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24826/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건설도시과 토목팀(전화: 033-639-2487, FAX: 033-639-2485)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건설도시과 토목팀(033-639-248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를 “속초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속초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속초시 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위원회”를 “속초시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과장”을 “건설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구성비율은 「속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0조를 따른다.

1.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다른 발주청의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2.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해당 분야의 전문가

제2조제5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4조제6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2. 영 제19조제4항제3호에 따라 속초시가 시행하는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영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장은 계획·조사·설계용역의 수행의 단계에서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에 대하여 1회 이상 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거나 계획·조사·설계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할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계자문”을 “기술자문”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설계변경”을 “그 밖에 설계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의 제목 “(설계등 의견청취)”를 “(의견청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있으며, 「건설기술관리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있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제9조에 따른”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설계자문위원회”를 “기술자문위원회”로 한다.

제10조 중 “설계자문대장”을 “기술자문대장”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3호서식, 제4호서식 및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심의를 신청한 안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기술자문요청서

「속초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설계자문을 요청합니다.

1. 공 사 명 :
2. 공 사 개 요 :
3. 공 사 위 치 :
4. 소 요 공 사 비 :
5. 착공예정년월일 :
준공예정년월일 :
6. 설계상특기사항 :

년 월 일

속 초 시 장 (직인)

속초시기술자문위원회위원장 귀하

설계변경자문요청서

「속초시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요시설공사의 설계변경의 자문을 요청합니다.

1. 공 사 명 :
2. 공 사 개 요 :
3. 공 사 위 치 :
4. 소 요 공 사 비 :
5. 당초 설계금액 :
- 변경 설계금액 : (증 · 감)
6. 착 공 년 월 일 :
7. 준공예정년월일 :
8. 계 약 업 체 명 :
9. 변 경 사 항 :
10. 변 경 사 유 :

년 월 일

속 초 시 장 (직인)

속초시기술자문위원회위원장 귀하

설계사전기술검토보고서

1. 공 사 명	
2. 검토내용	

「속초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설계 사전 기술검토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자문위원 : (인)

속초시기술자문위원회위원장 귀하

기술자문위원회 의결서

의안번호 : -

1. 의 안 명 :

2. 방 법 :

3. 일시 및 장소 :

4. 참 여 인 원 :

4. 의 결 사 항

- 상기 의안을(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자문) 하는 것으로 의결함.

구 분	분야별	소속 및 직위	성 명	서 명	의결내용		비 고
					찬성	반대	

[별지 제6호서식]

기 술 자 문 대 장

공 사 명				의안번호		요청부서	
접수일자				회의일시		완결일자	
공사기간		총공사비		금회공사비			
자문방법	심 의() 의견청취 [사전기술검토(), 기타()]						
자 문 자							
자문결과							
특기사항							
비 고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속초시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을 통해 부실설계를 방지하기 위하여 속초시설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 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 원장은 건설과장이 된다. ③·④ (생략) ⑤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u>속초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속초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속초시 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속 초시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② ----- - 건설업무 담당부서장--.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구성비율은 「속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0조를 따른다.

1. 건설업무와 관련된 속초시 소속 5급, 6급 이상 공무원

2. 당해분야의 대학 조교수급 이상인 자

3. 건설관계 단체와 연구기관의 임원

4. 당해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5. 당해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의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7. 기타 당해분야에서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⑥ (생략)

제3조(위원회의 기능) ① 영 제21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해 시장이 자문을 요청할 경우 영 제2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는 심의하고, 제7조 규정에 의하여는 의견청취의 방법으로 자문에

1.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다른 발주청의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2.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해당 분야의 전문가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⑥ (현행과 같음)

제3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4조제6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

응하여야 한다.

② 설계에 계상된 물량과 공사비의 산정은 제외하며, 수해 등 긴급을 요하는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과 준설공사 및 도로공사 등 내용이 단순·반복되는 공사와 설계 등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을 받을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4조(설계 등 자문요청) ① 자문을

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2. 영 제19조제4항제3호에 따라 속초시가 시행하는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영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속초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장은 계획·조사·설계용역의 수행의 단계에서 제1항에 따른 심의 사항에 대하여 1회 이상 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거나 계획·조사·설계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할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설계 등 자문요청) ① -----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설계자문 요청서와 다음 각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 7. (생략)

② 건설공사 설계변경의 자문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설계변경자문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설계변경 자문에 필요한 자
료

③ (생략)

제5조(설계등 자문대상) ①영 제21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자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총공사비(관급
자재를 포함한 금액) 2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토지 매입비는 제외한다)
2. 총공사비 20억원(토지 매입비는
제외한다)이상인 건설공사로서
공사 발주의 장 또는 허가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공사
3. 용역비 3억원 이상인 설계 용역
4.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또는 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건설공사로서 기본적인 계획

----- 기술
자문 ----- 각 호-----
-----.

1. ~ 7. (현행과 같음)

② -----

----- 각 호-----
-----.

3. 그 밖에 설계변경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5. 영 제21조제5항 규정에 의한 사항

6.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

제6조(설계등 자문범위) 위원회의 자문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다만, 설계에 계상된 물량과 공사비의
산정은 제외한다.

1.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설
공사는 설계의 타당성, 구조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설계등 의견청취) ① 위원장
은 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
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건설
기술관리법」 제16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한 건설기술연구기관 등에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
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8조(회의) ① ~ ③ (생략)

<삭 제>

제7조(의견청취) ① -----

있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제9

조에 따른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위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설계자문위원회 의결서에 서명하고
그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별지 제5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의 설계자문대장을 비치
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 5. (생략)

④ -----
기술자문위원회 -----
-----.

제10조(회의록) -----

--- 기술자문대장-----.

제12조(위원의 해촉) -----
각 호의 어느 하나-----
-----.

1. ~ 5.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발 체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정의)제6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6조(기술자문위원회) ①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기술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정한다.

제9조(공동 연구·개발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과 관련된 공공기관·법인·단체·대학(이들의 부설연구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건설기술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인력·자금·시험시설 및 기술정보의 효율적 활용과 선진 건설기술 획득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연구를 추진하거나 건설기술연구기관의 건설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발주청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다른 발주청의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2.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해당 분야의 전문가

② 발주청은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계획·조사·설계 용역의 수행단계에서 제4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하여 1회 이상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계획·조사·설계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할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발주청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자문에 대하여 의견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기술자문위원회는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영 제65조제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나. 영 제7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다. 영 제85조제6항에 따른 대안입찰·일괄입찰의 설계심의에 관한 사항

라. 영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마. 영 제103조제3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바. 영 제105조제4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6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3. 총공사비가 10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 변경 등 중 대한 설계 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해당 기술자문위원회가 속한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 용역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에 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자문하는 사항

⑤ 기술자문위원회는 제4항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이하 "기술자문설계심의회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 기술자문설계심의회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제4항·제6항 및 제17조제5항·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6항 중 "시·도 또는 관할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은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본다.

⑦ 기술자문설계심의회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 및 별표 2를 준용한다. 다만, 발주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술자문설계심의 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1 범위에서 별표 2 제1호에 따른 설계심의회분과위원회 구성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을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자문위원회 및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정한다.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1종시설물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시설물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적제출일부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착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과 정밀안전진단대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속초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조례 조항을 정비하여 노인복지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를 조속히 보완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계약의 취소에 대한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 (안 제7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 12. 1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여성가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대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주소 :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 속초시청 여성가족과(노인복지팀)
- 연락처 : 033-639-2044 (FAX 033-639-2739)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여성가족과 노인복지팀(033-639-20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 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u>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u>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제7조(위탁의 취소) ----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 -----.
1. <u>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u>	<삭 제>
2. <u>수탁자가 본 조례의 규정 또는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u>	<삭 제>
3. <u>복지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때</u>	<삭 제>
4. <u>복지관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문란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될 때</u>	<삭 제>
5. <u>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았을 때</u>	<삭 제>
6. <u>기타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u>	<삭 제>

관 계 법 령 발 취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행정재산이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으로서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사용·수익자에게 취소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속초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조례 조항을 정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를 조속히 보완하여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우선구매에 대한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 (안 제9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 12. 1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여성가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대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주소 :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 속초시청 여성가족과(노인복지팀)
- 연락처 : 033-639-2044 (FAX 033-639-2739)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여성가족과 노인복지팀(033-639-20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9조(생산품 우선 구매) ① 시장</u> <u>은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된</u> <u>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u> <u>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u> <u>② 시장은 제1항의 기업 및 단</u> <u>체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u> <u>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u>	<u><삭 제></u>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재무상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기준 및 지명절차,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2.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행정자치부령에 따른 재난복구 등의 경우
3.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공사에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행

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하나의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다. 마감공사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라.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에서의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마. 특허공법,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새로운 전력기술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방재신기술(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의한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바.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시험가동을 포함한다) 또는 정비하는 경우

사.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아.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자.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차.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카.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특정인의 재산을 임차하는 경우

타.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파.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문화재 발굴(조사)용역으로서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지연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시굴(試掘)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등 문화재 발굴의 연속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마.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

6.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재산 등을 매입하거나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

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이 3년을 넘는 경우에는 3년을 말하며, 주무부장관이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3년을 넘는 경우에는 3년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 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 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우수조달공동상표의 물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서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하기로 협약한 제품

7. 특정연고자, 지역주민 및 특정물품 생산자 등과 계약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나.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묘목재배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

다.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의 복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7의2.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나. 물품의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을 하게 할 때 입찰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삭제

라. 삭제

마. 삭제

바. 삭제

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아. 시험지와 비밀문서의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6호나목, 같은 항 제7호다목 및 같은 항 제7호의2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요건
2. 수의계약대상 물품의 직접 생산 및 용역의 직접 수행 가능 여부